◎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 - 428호

「은행업감독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「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2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

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 규정변경 예고

1. 개정이유

예대율 산출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,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대출 등 12종을 제외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원화예대율 산정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 지원대출,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대출 등 12종 제외(안 제26조 1항 3호 마목에서 너목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<u>2022년</u>

<u>12월12일까지</u>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03171)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,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
- 전자우편(이메일): jmlee1012@korea.kr
- 팩스 : 02-2100-2948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(전화 02-2100-298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